

작성 방법

1.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 등에서 거래상대방(①・②・⑩・⑪)란에는 제출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법인명・상호(또는 성명)와 사업자등록번호(또는 주민등록번호)를 적습니다.
2. 매출거래 등의 ③～⑨란과 매입거래 등의 ⑫～⑱란에는 제출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의 총액을 유형별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.
3. 금전대부거래에 있어서는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전채권・채무의 잔액을 기입합니다. 이 경우 작성법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매출거래 등의 금전대부(⑧)란에 기입하고, 채무자인 경우에는 매입거래 등의 금전대부(⑰)란에 적습니다.

사 업 연 도	· · · ~ · · ·	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(을) (자본거래)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증자 및 감자

(단위 : 원)

거래상대방		구분		⑤일자	증자(또는 감자)전		증자(또는 감자)후	
①법인명	②사업자 등록번호	③증자	④감자		⑥액면총액	⑦지분	⑧액면총액	⑨지분
						%		%
						%		%
						%		%
						%		%
						%		%
						%		%
						%		%
						%		%
						%		%
						%		%
						%		%

2. 합병 및 분할 등

(단위 : 원)

거래상대방		구분		⑭일자	순자산의 시가 및 지분율				⑰ 합병 비율
⑩법인명	⑪사업자 등록번호	⑫합병	⑬분할합 병		합병법인 등		피합병법인 등		
					⑮순자 산	⑯지분	⑰순자산	⑱지분	
						%		%	1:()
						%		%	1:()
						%		%	1:()
						%		%	1:()
						%		%	1:()
						%		%	1:()
						%		%	1:()
						%		%	1:()
						%		%	1:()
						%		%	1:()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1. 증자 및 감자와 합병 및 분할란의 출자법인(①・②・⑩・⑪)란은 해당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증자 및 감자 또는 합병 및 분할합병한 경우 그 법인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2.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중 증자(또는 감자)한 경우에는 구분(③・④)란의 해당란에 "○"으로 구분표시하고 각 해당란(⑤ ~ ⑨)에 증자 또는 감자일자, 증자 또는 감자전후 소유주식 등의 액면총액 및 지분비율을 각각 적습니다.
3.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합병(또는 분할합병)한 경우에는 구분(⑫・⑬)란의 해당란에 "○"으로 구분표시하고 각 해당란(⑭ ~ ⑰)에 합병등기일자(또는 분할등기일자)와 합병등기일(또는 분할등기일) 현재의 합병법인(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인), 피합병법인(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)의 순자산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에 따른 시가와 실제합병비율을 적습니다. 이 경우 분할합병에 있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과 분할합병비율을 적습니다.
4. ⑱합병비율란의 ()안에는 피합병주식의 주식 1주에 대한 합병법인 주식의 교부비율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습니다.